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상호의 변경신고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그 밖의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해당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자와 협의하여 허가관청이 정하는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 실시대장,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또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작성·보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제5항 중 “검사증명서”를 “검사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로 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휴지”를 “재난 그 밖의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고, 휴지”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또는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나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특수작업형”을 “특수용도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제외한다.

1.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또는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2.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3.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 중인 발전소의 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 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

밸브 이후의 시설을 말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검사 대상기기의 앞 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을 말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정사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을 “특정사용자의 요청에 따라”로, “서로 협의하여 정한”을 “검사 시기를 서로 협의하여 정하거나, 재난 그 밖의 긴급사태 발생에 따라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인정하여 검사 시기를 따로 정하는 경우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결과를 공개 한다.

가.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 제7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다. 제7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라. 제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2. 검사 결과 중 공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사용시설의 명칭
- 나. 사용시설의 소재지(주소)
- 다. 사용시설의 검사일자
- 라. 사용시설의 검사 종류
- 마. 사용시설의 검사 결과

3. 제2호에 따른 사항은 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결과를 검사 일자가 포함된 당해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제2호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해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3)차)(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보 또는”을 “경보장치와 과충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6) 중 “저장설비·가스설비”를 “그 바깥 면(시설이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그 건축물의 바깥 면을 말한다)으로부터 저장설비·가스설비의 바깥 면”으로,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을 “지면”으로, “중심을 말한다)으로부터”를 “중심까지”로 하며, 같은 목 7) 중 “없다”를 “없다. 다만,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7)에 가) 및 나)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가) 5)나)·다)·바)·사) 및 차)부터 파)까지의 건축물 또는 시설(시설이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그 건축물을 말한다)의 모든 벽을 내화구조로 할 것

나) 하나의 구획실의 면적이 500m²를 초과하거나 2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실 또는 해당 층의 2면 이상의 벽에 각각 출입구를 설치하고, 해당 건축물 외부의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2개 이상의 통로를 확보할 것

별표 4의2 제2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 중 “단서·8)다)”를 “단서·8)다)·10)라)”로, “8) 및 9)”를 “3)·4)·8)·9)·1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저장탱크의 재검사를 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저장시설을 설치·사용할 수 있고, 임시저장시설은 안전하게 설치할 것. 이 경우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8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행정처분의 적

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행정처분 차수는 가중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5 제3호가목10)을 11)로 하고, 같은 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10)까지”를 “11)까지”로 한다.

10)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

별표 19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일시의 통보 및 조정

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른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알려야 한다.

나.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그 밖의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해당 일시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일시로 교육일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0 제5호 중 “및 캠핑용트레일러 사용시설”을 “사용시설”로 하고, 같은 호 중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를 “내”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7일(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경우 15일)”을 “뒤쪽 참고”로 하고, 같은 서식 중 “7 Days (15 Days for foreign gas appliances)”를 “Referto the back page”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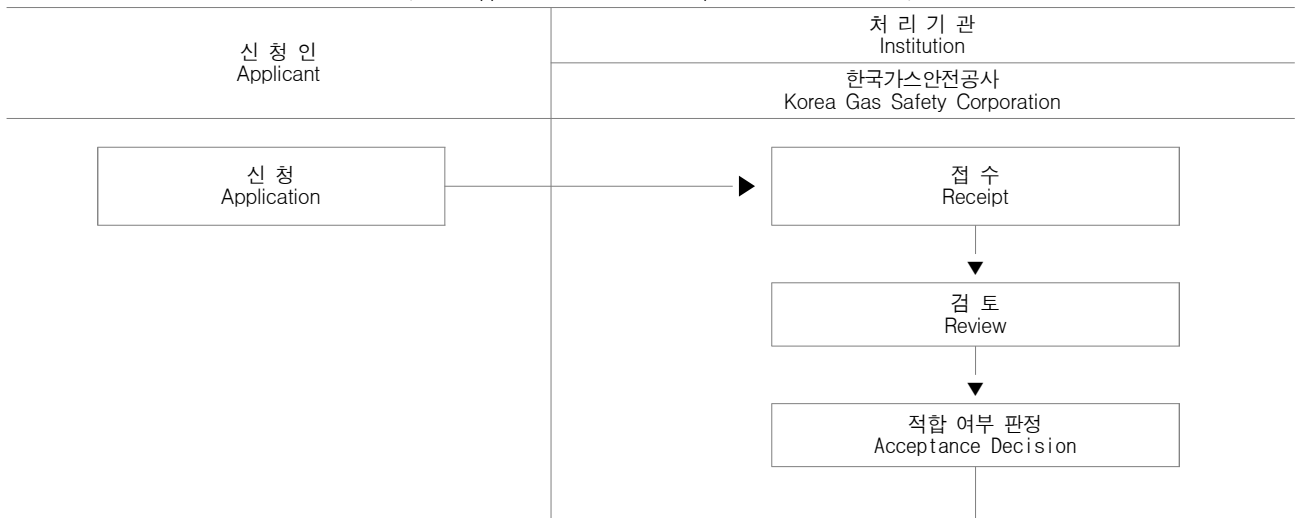
※ 앞쪽의 사업의 종류 및 대상 범위란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작성하고, 가스용품 제조사업이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경우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Fill in the blanks of the business type and scope mentioned preceding page with the following relevant information, and in case of manufacture business of gas appliance or manufacture registration of foreign gas appliance, including kinds of gas appliance.

사업의 종류 (Business type)	대상 범위 (Scope)	처리기간 (Process term)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LP Gas filling business)	용기 충전사업 (Cylinder filling business)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Vehicle Cylinder filling business) 소형용기 충전사업 (Small Cylinder filling business)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Gas Heater Cylinder filling business)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Tanks Fixed on Vehicle filling business)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Storage Tank through piping filling business)	7일 (7 days)	
가스용품 제조사업 (Gas appliance production business)	-	7일 (7 days)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	15일 (15 days)	
사업의 종류 및 대상 범위 (Business Type and Scope)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LP Gas Collective Supply business)	배관망공급사업 (Pipe Network Supply business)	제조소: 10일 정압기·배관: 5일 (Manufactory: 10days Governor station and pipes: 5days)
		일반집단공급사업 (General Collective Supply business)	7일 (7 days)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LP Gas Sales business)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LP Gas that is filled in Cylinder sales business)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LP Gas that is filled in Cylinder Tanks Fixed on Vehicle sales business)	7일 (7 days)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Places LP Gas filling business premises)	-	7일 (7 days)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Places storing LP Gas)	-	7일 (7 days)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 (Specified LP Gas use)	-	7일 (7 days)

처리절차(Handling Process)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This application form will proceed as follows.)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용기”를 “저장설비”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중 “당사(점)의 사정”을 “고객의 사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3)차) 및 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	-----	---------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세부 내용	사업의 종류:	
	허가나 등록 번호:	허가나 등록 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지위승계 내용	[] 상속 [] 양수 [] 합병 [] 그 밖의 것
	상호의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small>※ 상호의 변경을 지위승계 시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 표기</small>
	지위승계 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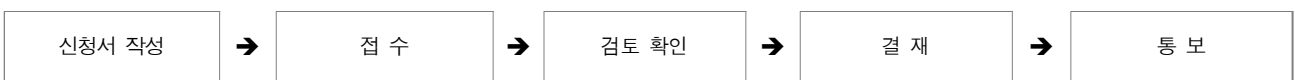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 · 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가스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관리 실시대장,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또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 ④ (생략)

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그 밖의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해당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자와 협의하여 허가관청이 정하는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 서류 -----

----- 이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작성·보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2. (생략)

④·⑤ (생략)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또는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나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1. ~ 6. (생략)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에서 자동차의 연료용 외의 용도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1.·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

----- 자 -----

-----.

1. ~ 6. (현행과 같음)

7. -----

----- 특수용도형 -----

8. ~ 9. (생략)

<신설>

8.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제외한다.

1.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또는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2.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3.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 중인 발전소의 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 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을 말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검사대상기기의 앞 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을 말한다)에서 액화석유

⑤ ~ ⑪ (생략)

<신설>

⑤ ~ 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결과를 공개 한다.

가.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 제7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다. 제7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라. 제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2. 검사 결과 중 공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용시설의 명칭

나. 사용시설의 소재지(주소)

다. 사용시설의 검사일자

라. 사용시설의 검사 종류

마. 사용시설의 검사 결과

3. 제2호에 따른 사항은 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결과를 검사 일자가 포함된 당해 분기 종료일 부터 10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 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제2호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해야 한다.